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구보

http://www.seo.incheon.kr/

선람	기관의장		제1630호 2021. 10. 28.(목)

차 례

공 고

○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9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---------- 1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 **편집 : 홍보정책담당관 [032-560-4146]**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1-1892호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10. 28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개정이유

○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및 인사권 독립에 따른 증원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정원조정 : 증원 5명

- 1,390명 ⇒ 1,395명

○ 직급별 정원 조정【안 별표 3】

- **(일반직)** 1,285명 **⇒ 1,390명 (증 5명)**
  · 6급 이하 : 1,303명 ⇒ 1,308명(증 5명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1년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 : 기획예산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화 032-560-4042, 팩스 032-560-2703)

○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○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1. 개정이유

○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및 인사권 독립에 따른 증원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정원조정 : 증원 5명

- 1,390명 ⇒ 1,395명

○ 직급별 정원 조정【안 별표 3】

- (일반직) 1,285명 ⇒ 1,390명 (증 5명)

· 6급 이하 : 1,303명 ⇒ 1,308명(증 5명)

3. 참고사항

○ 개 정 안 : “별지 참조”

○ 신·구조문대비표 : “별지 참조”

○ 예 산 수 반 사 항 : “비용추계서 별첨”

○ 관 계 법 령 발 췌 : “해당 없음”

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,390명”을 “1,39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20명”을 “25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인천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의 총수 1,390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1,395명--- ----------.
1. 집행기관의 정원: 1,370명	1. ----------.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: 20명	2. ----------: 25명

【 별표 3】

정원관리 기관별 · 직급별 정원 (제4조 관련)

기관별 /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기구	직속기관	출장소	동
총 계	1,395	-				
정무직 계	1	-				
구청장	1	1				
일반직 계	1,390	-				
2급	1	1				
4급	8	6	1	1		
5급	73	39	2	8	1	23
6급 이하 계	1,308	-				
연구직 계	1					
연구사	1	-				
별정직 계	3	-				
6급 상당 이하 계	3	-				

[붙임 1]

비용소요 추계서

(단위 : 원, 명, 월)

구 분	소요비용	산 출 근 거						비 고
		내역	단가	인원	비율 등	월(회)수	계	
총계	224,606,161							
1. 인건비	194,986,798							
가. 기본급	155,000,400	○ 7급(10호봉)	2,746,500	4		12	131,832,000	
		○ 8급(4호봉)	1,930,700	1		12	23,168,400	
나. 상여금	9,558,358	○ 정근수당	155,000,400		0.08	2	9,558,358	90%평균
다. 정액수당	30,428,040							
1)가족수당	3,648,000	○ 배우자	40,000	5	0.78	12	1,872,000	
		○ 존비속	20,000	5	1.48	12	1,776,000	
2)정근수당가산금	2,880,000	○ 10년~15년미만	60,000	4		12	2,880,000	
		○ 5년~10년미만	50,000	0		12	0	
3) 정액급식비	8,400,000	○ 일반직	140,000	5		12	8,400,000	
4) 명절휴가비	15,500,040	○ 명절휴가	155,000,400	5	0.05	2	15,500,040	
2. 직무수행경비	8,220,000							
나. 직급보조비	8,220,000	○ 7급	140,000	4		12	6,720,000	
		○ 8급	125,000	1		12	1,500,000	
3. 포상금	21,399,363							
가. 성과상여금	21,399,363	○ 7급	3,543,900	4	1.25	1	17,719,500	A등급
		○ 8급	2,943,890	1	1.25	1	3,679,863	A등급

※ 수당 중 위험근무, 대우공무원, 관리업무, 특수업무, 민원업무, 전산업무, 장려, 의회사무, 의료업무,동근무, 사회복지업무, 초과근무 등 제수당은 개인별 격차가 광범위하고 산발적이므로 추계하지 아니함

의 견 제 출 서

검 토 구 분		유	무
검토사항	1.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.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.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 여부 6. 기타 문제점		

실·국(군·구)별 의견

협의개요	실·국별	제 출 의 견	검 토 내 용

의 견 제 출 서

1. 자치법규명		
2.	성명(단체명/대표자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
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 제출인 주소

(전화 :)

성명 (서명 또는 인)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

비고	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